

2019년도 제24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I. 회의 개요

- 일 자 : 2019. 11. 8.(금요일)
- 방 법 : 온라인심의
- 참 석 자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
 - 심의위원 : 김경숙 위원(분과위원장), 박재화 위원, 박정인 위원, 최현용 위원
-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〈의결안건〉 ※ 안건 검토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II. 회의내용 및 결과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 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63건(안건번호 제2019-143961호~144021호)
 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.

Ⅲ. 주요내용

- A 위원 : 안전번호 제2019-143961호~144021호는 '○○○○'등 총 8개의 OSP에 게시된 63건의 게시물은 가수 등의 '인기'를 비롯하여 현재 인기있는 가요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, 이를 온라인상으로 복제 전송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이용자들이 영리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웹하드에 복제 전송을 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바, 이는 합법적인 이용행위를 벗어나는 불법 이용행위에 해당함. 이에 불법 복제한 음악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. 다만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요청함.
- B 위원 :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법 133조의 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. 다만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경우 경고의 시정권고가 타당할 것임.
- C 위원 : ○○○○ 사이트 등의 게시물은 불법 복제한 음악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.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.
- D 위원 : 안전번호 제2019-143961~144021호는 불법 복제한 음악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3의 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

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
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.

2019년 제248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
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19. 11. 8.

분과위원장 김경숙

위원 박재화

위원 박정인

위원 최현용